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 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폐지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제명을 “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변경
- 쓰레기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지급 제외규정 등의 신설로 포상금 지급의 명확성 확보와 당초 취지의 포상금 지급 의미 규정
 -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범위 안에서 지급
 - 포상금은 1인, 1단체에 월20만원, 연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신고 유효기간은 위반행위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포상금지급 제외규정
 -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 연간 포상금지급 한도액을 초과한 신고건의 경우
 -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

3. 참고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
과징수 조례”를 “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제8조”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시장은 쓰레기무단투
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미시 관내 거주
자에 한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신고방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차량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색상, 오염 행위자의 성명, 나이 정도,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는 장소, 시간, 불법행위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는 과태료 부과권자(시장)가 요구하면 증거물 또는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은 신고접수 순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신고 유효기간은 위반행위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4. 신고포상금은 1인, 1단체에 월20만원, 연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된 위반행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익명 신고 및 불법 행위자를 알지 못할 경우
3.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방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1,000	2,000	3,000	
	2.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외의 곳에 버린 자(법 제8조)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7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	150	2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마.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500	700	1,000	
	3.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	1,000	1,000	1,000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9조)	1,000	1,000	1,000	
	5.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34조)	1,000	1,000	1,000	
	6.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				
	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0	400	500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300	500	1,000	
	7.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자(법 제39조)	300	500	1,000	

적용법	부과방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8.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	1,000	1,000	1,000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	1,000	1,000	1,000	
	10.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시간,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나.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행위(「대기환경보전법」에 제외되는 행위에 한함)	100	200	300	
	다.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11.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제2항)	300	500	1,000	
	12. 규격봉투지정판매소가 아닌 업소에서 규격봉투 판매행위를 할 경우	100	200	300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제1종 지정사업장의 경우	2,000	2,500	3,000	
	나. 제2종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1,500	2,000	3,0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	3,000	3,000	3,000	
	3. 제품의 포장 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기준보다 25%미만초과한때 (2)기준보다 25%이상초과한때	2,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적 용 법	부 과 방 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자 원의 절약 및 재활 용촉 진에 관한 법 률」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때 (2)기준보다 2회이상 더 포장한때	2,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 (라미네이션)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3,000	3,000	3,000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발 포 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	3,000	3,000	
	마.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율 미 이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3,000	3,000	3,000	
	바.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용적 3 만㎡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 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 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	3,000	3,000	
	사. 가전제품을제조·수입하는 자가용적 3 만㎡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 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 화 기 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아. 가전제품제조자 등이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계획의 미 제출에 대한 이해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자. 제조자등이 가전제품 판매 시 구매자 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 수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1회 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또는 첩 합(라미네이션)된 1회용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0	3,000	3,000	

적 용 법	부 과 방 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자 원의 절약 및 재활 용촉 진에 관한 법 률」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가가 1회용품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숙박업소(객실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 면적이 33㎡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무상제공 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2)매장면적이 33㎡이상 165㎡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 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3)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4)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이상인 도·소매업을 제외한다), 가정용 기기, 기구 및 장비 소매업, 기타일반 금융업, 기타금융업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법, 부동산임대 및 공	2,000	3,000	3,000	

적용법	부과방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차위	2차위	3차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에서 합성수지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 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기간내에서 산정 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 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상속한다.

【별표2】**포상금 지급기준**

행위	포상금(천원)
1.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0
2.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
3.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50
4.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50
5.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0
7.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 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8.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묶 지 않고 배출한 경우	25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구미시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 노처리 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명] 문구조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 물관리법」 제6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오수분 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 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 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 다)의 부과, 징수사무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및 문구 정리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할 때 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 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 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 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 ----- ----- ----- 「폐기물관리법」 제8 조----- ----- ----- -----	• 폐기물관리법 개 정에 따른 반영
제6조(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 자 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쓰 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 금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별표2」의 행 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 기 무단투기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육하원 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 자 포상금 지급)시장은 쓰레 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구미시 관내 거 주자에 한한다.	• 문구 조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 차량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명, 나이 정도,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장·농지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는 경우에는 장소, 시간, 불법행위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요구하면 증거물 또는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2(신고방법) ①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차량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명, 나이 정도,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 하는 경우에는 장소, 시간, 불법행위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는 과태료 부과권자(시장)가 요구하면 증거물 또는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신고포상금의 적절한 지급을 위한 신고방법 신설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신설>	제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 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 에서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은 신고접수 순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신고 유효기간은 위반행위 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4. 신고포상금은 1인, 1단체에 월20만원, 연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제6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 하여야 하며 신고된 위반행 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 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1.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익명 신고 및 불법 행위자 를 알지 못할 경우 3.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 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4. 기타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1】과태료 부과기준					【별표1】과태료 부과기준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반영		
적용 법	부과 방 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적용 법	부과 방 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0조 제3항 및 제44조의2 제1항)	1,000	2,000	3,000		「폐기물관리법」	1.----- ----- ----- (법 제40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원, 도로 등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외의 곳에 버린 자(법 제7조)						2.----- ----- ----- --(법 제8조)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	1,000	1,000	1,000			3. ----- ----- ----- (법 제36조)					
	4.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 제4항)	1,000	1,000	1,000			4. ----- ----- (법 제29조)					
	5.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신고한 자(법 제39조 제1항)	1,000	1,000	1,000			5. ----- ----- (법 제34조)					
	6.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조)						6. ----- ----- ----- ----- ----- (법 제35조)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적용법	부과방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적용법	부과방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가 ~ 나 (생략)					「폐기물관리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반영
	7.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3조 제1항)	300	500	1,000			7. ----- ----- (법 제39조)								
	8.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	1,000	1,000	1,000			8. ----- -----(법 제39조)								
	9.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 제1항)	1,000	1,000	1,000			9. ----- -----(법 제50조)								
	10 ~ 12 (생략)						10 ~ 12 (현행과 같음)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원재활용촉진을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 제2항)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 ----- --(법 제26조 제2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된 반영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	3,000	3,000	3,000			2. ----- ----- (법 제9조)								
	3. 제품의 포장 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2항)						3. ----- ----- ----- -----(법 제9조)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적용 범	부과 방 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적용 범	부과 방 법	부과금액(천원)			비고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 ~ 자 (생략)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 ~ 자 (현행과 같음)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반영
	4. 가 ~ 나 (생략)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숙박업소(객실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 면적이 33㎡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바 (생략) 5.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 기준준수를 위하여 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 나 (생략)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4조제3항)	3,000	3,000	3,000			4.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중위생관리법」 ---- ----- ----- ----- 라. ---- -- 제3조 ---- ----- ----- ----- (1)~ 바 (현행과 같음) 5. ---- ----- ----- -----(법 제15조) 가 ~ 나 (현행과 같음) 6. ---- ----- --(법 제36조제3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2】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별표2】 포상금 지급기준		- 문구조정 - 포상금지급요율 및 과태료금액삭제
행위	과태료	포상금상환	행위	포상금(천원)	
1.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0	15	1.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0	
2.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25	2. 비닐봉지·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	
3.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0	50	3.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50	
4.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50	4.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50	
5.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100	5.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250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50	
7.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50	7.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8.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25	8.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25	

□ 참 고 자 료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